

2 외국인 투자 유치의 부진

- (현황)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, 실제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인 투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한 아직 경쟁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(저해 요인)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생산요소 시장의 경직성, 정부 규제,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, 통관 및 무역 제한 조치, 시장접근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경쟁 유치국들에 비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임
- (개선 방안)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자유화 확대, 정부 규제 개혁의 가속화, IR(Investor's Relationship)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

○ (현황)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세를 보이고는 있으나, 실제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인 투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한 아직 경쟁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
-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80년대 후반 이후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90년대초에는 그 증가세가 정체된 후 94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
 - 특히 96년 이후에는 연평균 60%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96년 32억 달러, 97년에는 69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음
- 그러나 97년도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해외자회사나 역외 금융 시장으로부터 들어오는 현금차관 형태의 투자와 국내 기존 투자의 철수분을 차감하면 실제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
- GDP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2.3%에 불과하여, 아시아 개도국 평균인 15.1% 수준이나 선진국의 9.1% 수준에 비해 크게 미달함

○ (저해 요인) 기업 경영 활동상의 편의 수준을 나타내는 '경제 자유도'가 경쟁 유치국들에 비해 낮아 투자환경이 열악

- (생산 요소 시장)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노동, 자본, 부동산, 인프라 등 국내 생산 요소 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요소비용이 경쟁국에 비해 훨씬 높음
 - 특히 현행 외환관리법상 제반 규제가 선물환시장 및 신종 금융상품의 개발을 저해하고 기업의 환위험 관리수단을 제약하여 기업활동상 어려움을 주고 있음
 - 그동안 초기 투자비용상 막대한 부담이 되었던 높은 지대는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그 부담이 덜해졌으나, 농지·준농지·산업용지 등 토지 사용상의 과도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
 - 수송 인프라의 포화 상태 및 유통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물류비 부담이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높음

- (정부규제) 각종 정부규제의 불투명성, 과도한 서류 작성 및 소요기간의 지연, 행정편의주의의 만연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회계자문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- (지적재산권) 96년도 산업재산권 관련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상의 개선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나,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영업비밀·미등록 의장 및 상표권 등의 효과적인 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(통관 조치) 통관시 과도한 심사,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, 중복 검사 등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어 보관료가 과다지출되고 있다는 불편이 제기됨
- (시장접근상의 제약)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50%까지만 내수판매가 허용되어 내수시장 진출에 애로가 있다는 불편이 제기됨

○ (개선 방안) 외국인 투자 자유화 확대, 정부규제 개혁의 가속화, 투자자 관계 (Investor Relationship) 관리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

-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출과 함께 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
 - 외국인 직접투자는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 유입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로이며 이를 신호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자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음
- 외국인 투자 자유화 확대
 -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M&A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
 - M&A 관련 규제조치의 정비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
 -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
 - 업종 개방 및 무역자유화의 확대
- 인허가 중심의 통제적 정부 기능을 사후 감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
 - 외환관리법상 해외차입 규제와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인허가제도에 따른 애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외환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
 - 토지 취득, 공업입지 및 공장 설립 관련 건축규제의 완화
 - 투자관련 제반조치의 간소화와 문의·결재 처리 소요 기간 단축
 - 모호한 각종 법규를 정비하여 행정관료의 자의성과 부패관행이 개입될 여지를 제거
- 투자자 관계(Investor Relationship) 관리의 강화
 - 외국인 투자관련 제반 업무의 일원화,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

(이 준 호 johlee@hri.co.kr, 김 연 호 yhkim@hri.co.kr)